

ISDS에서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연구:

한국 투자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 백 지 열

*논문접수 : 2026. 7. 19. *심사개시 : 2026. 7. 22. *게재확정 : 2026. 8. 10.

〈목 차〉

I. 서론	2. 한국 ISDS 사건의 분석
II. ISDS에서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IV.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1. ISDS상 amicus curiae 제도의 의의와 발전	1.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규정의 문제점
2. ISDS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범 체계	2.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규정의 정비 방향
III. 한국 투자협정 및 ISDS 사건에서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법적 검토	V. 결론
1. 한국 투자협정의 규율 현황	참고문헌

I. 서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라 함)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 투자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체제로 이해되어 왔다.¹⁾ 이는 투자협정에 근거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한 국가의 조치를 통제하는 제도로써 국제상사중재의 맥락에서 발전해 왔다.²⁾³⁾ 그러나 ISDS는 분쟁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에

1)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분쟁’만을 연구범위로 삼고, ‘국가 간의 투자분쟁’은 연구범위로 삼고 있지 않다.

서 본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중보건, 환경 등 공익과 밀접한 국가의 규제조치가 ISDS의 대상이 되면서 공익적 고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⁴⁾ 즉, ISDS는 점차 공공의 이익과 투자자 권리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⁵⁾

이러한 변화는 ISDS의 정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야기하였다. 특히 ISDS가 공공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사적 계약을 통해서 선임되어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 이러한 의사결정이 폐쇄적이라는 점 등이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⁶⁾ 이러한 비판은 ISDS가 공적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라 함)의 참여 확대는 ISDS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NGO는 특정 사건의 분쟁당사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amicus curiae’(‘법정의 친구’, ‘법정조언자’, ‘외부조언자’라고도 번역되나 원문 그대로 사용함)로서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공익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ISDS에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공중보건 등과 같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하여 ISDS 절차의 공공성의 결여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⁷⁾ 특히 국제적으로 이러한 NGO의 참여는 ISDS의 투명성, 정당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

2) Anthea Roberts, “Clash of Paradigms: Actors and Analogies Shaping the Investment Treaty System”,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7, No.1 (2013), p. 45.

3) ISDS는 신청인이 사인 또는 기업, 피신청인이 국가라는 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사인 또는 기업인 상사중재와 다르다. 박덕영 외 13인, 『국제투자법』, 15면 (박영사, 2012).

4) Kyla Tienhaara, “Regulatory Chill in a Warming World: The Threat to Climate Policy Posed by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7, No.2 (2018), p. 229.

5) Stephan W. Schill, “Enhanc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Legitimacy: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a New Public Law Approach.”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2, No.1 (2011), p. 69.

6) Charles N. Brower and Stephan W. Schill, “Is Arbitration a Threat or a Boon to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 No.2 (2009), p. 497; OECD, Transparency and Third Party Participation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05/01 (2005), pp. 2-3; Gus Van Harten,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of Individual Claims against the Stat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6, No.2 (2007), p. 393.

7) Eugenia Levine, “Amicus Curia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he Implications of an Increase in Third-Party Participation”,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9, No.1 (2011), pp. 209-211.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⁸⁾

그러나 NGO의 참여 확대가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NGO의 의견 제출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입장이나 특정한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특성은 현행 ISDS의 구조, 즉 분쟁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중립적 중재판정부가 판단하는 구조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⁹⁾ 또한 NGO의 amicus curiae 참여는 중재절차를 지연하고 비용을 높이기도 한다.¹⁰⁾ 나아가 NGO의 참여 확대는 ISDS 절차에 정치적 개입의 위험을 증가시켜 투자분쟁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¹¹⁾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NGO 참여에 관한 평가는 단순한 찬반의 대립구도로 접근하기보다 ISDS 절차를 규율하는 규범과 제도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NGO 참여의 효과는 그 참여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범위와 방식, 기한, 제출 요건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어떻게 규율되고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ISDS 절차에서 NGO의 amicus curiae 참여 중 서면의견서 제출은 투자협정과 중재규칙을 법적 근거로 하며,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구체화된다. 동일한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ISDS 사건이어도 적용 규범에 따라 참여의 법적 근거 및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일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함)에서는 명시적으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인정하고 있지만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이하 ‘BIT’라 함)에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공백을 발생시키고,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대한 규율의 일관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참여 보장과 절차적 효율성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amicus curiae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중재절차의

8) J. Anthony VanDuzer, “Enhancing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Through Transparency and Amicus Curiae Participation”, *McGill Law Journal*, Vol.52, No.4 (2007), pp. 685-686.

9) Eric De Brabandere, “NGOs and the ‘Public Interest’: The Legality and Rationale of Amicus curiae Interventions in International Economic and Investment Dispute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2, No.1 (2011), pp. 20-25.

10) Gary Born and Stephanie Forrest, “Amicus Curiae Participa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ICSID Review*, Vol.34, No.3 (2019), p. 656.

11) Chen Yu, “Amicus Curiae Participation in ISDS: A Caution Against Political Intervention in Treaty Interpretation”, *ICSID Review*, Vol.35, No.1-2 (2020), pp. 226-227.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검토하거나 원주민 등 특정 집단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¹²⁾ 반면에 한국의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초점을 맞춰서 NGO의 참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까지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ISDS에서 NGO의 *amicus curiae* 참여 방식 중 하나인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국제규범을 검토하고, 한국의 투자협정 및 ISD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투자협정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의 공익성, 투자중재의 효율성, 절차적 공정성을 조화할 수 있는 투자협정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ISDS에서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1. ISDS상 *amicus curiae* 제도의 의의와 발전

가. *amicus curiae*의 도입과 발전

*amicus curiae*는 ISDS에 활용되기 전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amicus curiae*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용어로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재판절차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참가자”를 의미한다.¹³⁾ 이러한 *amicus curiae* 제도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영미법계를 포함한 많은 국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¹⁴⁾ 뿐만 아니라 *amicus curiae*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의 국제분쟁해결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amicus curiae*의 광범위한 활용은 이 제도의 유용성과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⁵⁾

12) 김대중, “국제투자중재 절차의 제3자 참여와 투명성 문제”,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2호 (2016); 김인숙, “FTA ISD 소송절차상 투명성에 관한 연구: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제120호 (2014); 김진엽, “재생에너지 관련 잠재적 국제투자중재에서 원주민들의 권리보호: 원주민들의 비분쟁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2023) 참조.

13) Gary Born and Stephanie Forrest, *supra* note 10, p. 626.

14) Katia Fach Gómez, “Rethinking the Role of Amicus Curia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How to Draw the Line Favorably for the Public Interest”,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5, No.2 (2012), pp. 516-517.

분쟁당사자가 아닌 개인, 단체의 ISDS에서 amicus curiae 참여는 원래 투자협정이나 중재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은 ISDS에서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접수할 권한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동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00년 8월 25일 중재판정부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을 하였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공동체’(Communities for a Better Environment)와 ‘어스 아일랜드 연구소’(Earth Island Institute)도 2000년 9월 6일 공동으로 amicus curiae 참여를 신청하였다.¹⁶⁾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접수할 권한은 명시적으로 없으나, 중재절차에 관한 UNCITRAL 중재규칙 제15조 제1항을 검토하여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접수할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였다.¹⁷⁾ 또한 이 사건의 중재절차에서 신청인들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들의 구술심리 참석 요청, 중재절차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¹⁸⁾¹⁹⁾

이후 NAFTA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는 2003년 10월 7일 비분쟁당사자 참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 A항 제1문단에서는 어떠한 NAFTA의 조항도 비분쟁당사자의 서면의견서 제출을 받을 중재판정부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⁰⁾

15) Nicolette Butler, “Non-Disputing Party Participation in ICSID Disputes: Faux Amici?”,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66, No.1 (2019), pp. 145-146.

16)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Decision of the Tribunal on Petitions from Third Persons to Intervene as “Amici Curiae” (15 January 2001), p. 2(para.1).

17)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

Article 15

1. Subject to these Rule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duct the arbitration in such manner as it considers appropriate, provided that the parties are treated with equality and that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each party is given a full opportunity of presenting his case.

18)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Decision of the Tribunal on Petitions from Third Persons to Intervene as “Amici Curiae” (15 January 2001), pp. 12-22(para.24-48).

19)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판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가 분쟁당사자들이 제기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상세히 다루었다고 평가했지만, 해당 서면이 이 사건의 본안 판단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쳤는지는 명시하지는 않았다.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Final Award of the Tribunal on Jurisdiction and Merits (3 August 2005), p. 16(Part II, Chapter C, para.29).

20) Statement of the Free Trade Commission on Non-Disputing Party Participation (7 October 2003)

동 성명 B항 제3문단은 비분쟁당사자의 서면의견서에 날짜, 서명이 들어가고, 간결하며 부속서를 포함하여 20페이지를 넘어서는 안 되며, 분쟁의 범위 내 사안에 대해 신청인의 쟁점에 관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²¹⁾ 동 성명 B항 제6문단에서 비분쟁당사자의 서면의견서 제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관점, 특별한 지식, 통찰력을 제공하여 중재 관련 사실상, 법률상의 쟁점을 판단하는 데 기여하는지 여부, 분쟁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공익적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특히 고려한다고 하였다.²²⁾ 동 성명 B항 제7문단은 서면의견서 제출이 중재절차의 방해, 과도한 부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동 성명 B항 제8문단에서는 중재판정부는 비분쟁당사자 서면의견서 제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²³⁾ 이러한 성명의 내용들은 향후 살펴볼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A. Non-disputing party participation

1. No provision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limits a Tribunal’s discretion to accept written submissions from a person or entity that is not a disputing party (a “non-disputing party”).

21) Statement of the Free Trade Commission on Non-Disputing Party Participation (7 October 2003)

B. Procedures

3. The submission filed by a non-disputing party will:
 - (a) be dated and signed by the person filing the submission;
 - (b) be concise, and in no case longer than 20 typed pages, including any appendices;
 - (c) set out a precise statement supporting the applicant’s position on the issues; and
 - (d) only address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22) Statement of the Free Trade Commission on Non-Disputing Party Participation (7 October 2003)

B. Procedures

6. In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the Tribunal will consider, among other things, the extent to which:
 - (a)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would assist the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a factual or legal issue related to the arbitration by bringing a perspective, particular knowledge or insigh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isputing parties;
 - (b)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would address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 (c) the non-disputing party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tion; and
 - (d) here is a public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of the arbitration.

23) Statement of the Free Trade Commission on Non-Disputing Party Participation (7 October 2003)

B. Procedures

7. The Tribunal will ensure that:
 - (a) any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avoids disrupting the proceedings; and
 - (b) neither disputing party is unduly burdened or unfairly prejudiced by such submissions.
8. The Tribunal will render a decision on whether to grant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투자협정이나 중재규칙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투자협정이나 중재규칙을 통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투자협정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중재판정부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접수 권한에 관하여 처음으로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²⁴⁾ 2004년 미국 모델 BIT 제28조 제3항에서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접수하고 검토할 권한에 대해 규정하였다.²⁵⁾²⁶⁾ 2004년 캐나다 모델 BIT 제39조에서 비분쟁당사자의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²⁷⁾ 이어서 각국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투자협정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중재규칙에서는 2006년 ICSID 중재규칙부터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다.²⁸⁾ 동 규칙 제37조 제2항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상당 부분이 앞서 살펴본 NAFTA의 비분쟁당사자 참여에 관한 성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나 ‘공익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내용을 뺀 점이 특징적이다.²⁹⁾ UNCITRAL 중재규칙에는 별도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없고, 2014년 4월 1일에 발효된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칙’(이하 ‘UNCITRAL 투명성 규칙’이라 함) 제4조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추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2001년 ISDS에서 처음으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신청이 허용된 이후 이 제도는 ISDS

If leave to file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is granted, the Tribunal will set an appropriate date by which the disputing parties may respond in writing to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By that date, non-disputing NAFTA Parties may, pursuant to Article 1128, address any issues of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presented in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24) Eric De Brabandere, “Amicus Curiae: Investment Arbitrat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display/10.1093/law-mpeipro/e3030.013.3030/law-mpeipro-e3030?rskey=Uk6pRr&result=1&prd=MPIL>> (2026. 7. 12. 최종방문).

25) United States Model BIT 2004, Article 28(3).

26) 2004년 미국 모델 BIT와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비교를 참조하려면 법무부, 『한국의 투자 협정 해설서: 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67~68면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8) 참조.

27) Canada Model BIT 2004, Article 39.

28) 제3자에 의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허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 2006년 ICSID 중재규칙 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Stephan W. Schill et al. (eds.), *Schreuer's Commentary on the ICSID Convention*, Thi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p. 962.

29) ICSID Arbitration Rules (2006), Rule 37(2).

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³⁰⁾ 다양한 주체가 ISDS에서 *amicus curiae*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로 NGO가 *amicus curiae*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공익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amicus curiae* 참여를 신청하고 있다.³¹⁾ 추후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사례는 별도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특정 산업협회와 같은 이익단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같은 국제기구의 집행기관, 원주민도 *amicus curiae*로 참여하고 있다.³²⁾³³⁾ 예컨대 *Glamis Gold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퀘찬 원주민 공동체’(Quechan Indian Nation)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³⁴⁾

amicus curiae 참여는 ISDS에서 주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사건기록·자료 접근, 구술심리 참석 등의 다른 형태로도 요청되고 있기는 하다.³⁵⁾ 다만 ISDS에서 *amicus curiae* 참여가 서면의견서 제출 이외의 방법은 중재판정부에 의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Biwater Gauff v. Tanzani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들이 *amicus curiae*로서 소송자료 접근, 구술심리 참석, 중재판정부의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³⁶⁾ 추후 살펴보겠지만 투자협정이나 중재규칙에서도 대부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이외의 참여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0) Chen Yu, *supra* note 11, pp. 224-225.

31) Eugenia Levine, *supra* note 7, p. 209.

32) Lucas Bastin, “Amici Curia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Eight Recent Trend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30, No.1 (2014), p. 142.

33) 원주민의 비분쟁당사자로서의 참여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 김진엽, “재생에너지 관련 잠재적 국제투자중재에서 원주민들의 권리보호: 원주민들의 비분쟁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2023) 참조.

지방정부가 ISDS에서 *amicus curiae*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도 있다. Andrea K. Bjorklund, “The Participation of Sub-national Government Units as Amici Curia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 Chester Brown and Kate Miles (eds.), *Evolution in Investment Treaty Law and Arbi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304.

34) *Glamis Gold, Ltd. v. United States of America*, Decision on Application and Submission by Quechan Indian Nation (16 September 2005), pp. 1-2(para.1-13).

35) Lucas Bastin, *supra* note 32, p. 142; Chen Yu, *supra* note 11, pp. 224-225.

36) *Biwater Gauff (Tanzania) Ltd.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CSID Case No. ARB/05/22, Procedural Order No. 5, (2 February 2007), pp. 19-21(para.62-72).

이러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모두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공익 보호, 판정의 질 향상, 투명성 증진 등이 거론되고 있다.³⁷⁾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비용 증가, 절차 지연, 기밀성 침해, 정치화, 편향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³⁸⁾³⁹⁾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자체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는 어렵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신청의 주요 사례

여러 ISDS 사건에서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이 문제가 되었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ISDS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로 *Suez v. Argentina* 사건을 검토하겠다. 이 사건에서 5개 NGO가 2005년 1월 28일에 amicus curiae 참여를 신청하였다. 이들은 중재판정부에 amicus curiae로서 자신들의 법적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신청으로 이해하였다.⁴⁰⁾ 중재판정부는 2005년 5월 19일자 결정에서 ICSID 협약과 ICSID 중재규칙에 모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ICSID 협약 제44조에 따라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접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들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였다.⁴¹⁾⁴²⁾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책임에 관한

37) Katia Fach Gómez, *supra* note 14, pp. 543-546; Eric De Brabandere, *supra* note 9, pp. 18-19.

38) Chen Yu, *supra* note 11, pp. 227-228; Katia Fach Gómez, *supra* note 14, pp. 551-553.

39) 편향성과 관련하여 제3자 참여가 ‘법정의 친구’가 아닌 ‘분쟁당사자 일방의 친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Mariel Dimsey, “Article 4. Submission by a Third Person” in Dimitrij Euler et al. (eds.),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 Guide to th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134.

amicus curiae 참여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며,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대중, “국제투자 중재 절차의 제3자 참여와 투명성 문제”,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2호, 79면 (2016) 참조.

40)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9, Order in Response to a Petition for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as Amicus Curiae (19 May 2005), pp. 1-4(para.1-8).

4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조약 234호, 1967.3.23. 발효) 제44조
어떠한 중재소송절차도 본절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분쟁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중재에 부의할 것을 동의한 당시의 유효하던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본절에 의하여서나 또는 중재규칙이나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는 어떠한 규칙에 의하여 망라되지 아니한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재판소는 그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명시하면서 물에 관한 권리와 인권법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다만 중재판정부에서는 인권상 의무가 투자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지는 않았다.⁴³⁾ 이 사건은 2006년 ICSID Arbitration Rules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 ICSID 협약을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접수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허용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보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⁴⁴⁾

둘째로 *Biwater Gauff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을 살펴보겠다. 이 사건은 2005년 11월 2일 ISCID 사무총장에 의해 등록되었지만, 양 분쟁당사자는 2006년 3월 23일 중재판정부의 제1차 회의에서 2006년 4월 10일에 발효될 2006년 개정 ISCID 중재규칙이 향후 절차에 적용될 것을 합의하였다.⁴⁵⁾ 이 사건에서 5개 NGO는 2006년 11월 28일 ICSID 사무국에 *amicus curiae* 지위를 신청하였다.⁴⁶⁾ 중재판정부는 절차명령 제5호에서 2006년 개정 ICSID 중재규칙이 *amicus curiae*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amicus curiae*의 참여에 대해 서면의견서 제출 및 구술심리 참석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2006년 개정 ICSID 중재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⁴⁷⁾ 다만 중재판정부는 2026년 개정 ICSID 중재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분쟁당사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의 심리 참석을 허용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중재절차상 문서 접근 신청에 대해서도 공개자료를 통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이를 기각하였다.⁴⁸⁾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판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가 절차에 유용한 기여를 하였고,

42)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9, Order in Response to a Petition for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as Amicus Curiae, (19 May 2005), pp. 4-13(para.9-33).

43)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9, Decision on Liability (30 July 2010), pp. 99-102(para.256-262).

44) Epaminontas E. Triantafilou, "Amicus Submissions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After *Suez v. Argentina*",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24, No.4 (2008), p. 572.

45) *Biwater Gauff (Tanzania) Ltd.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CSID Case No. ARB/05/22, Award (24 July 2008), pp. 8-9(para.23-32).

46) *Ibid.*, p. 2(para.1).

47) *Ibid.*, pp. 13-17(para.46-55).

48) *Ibid.*, pp. 20-21(para.65-72).

그 의견이 중재판정부의 분석에 참고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평가하였다.⁴⁹⁾ 또한 이 사건은 2006년 개정 ICSID 중재규칙을 최초로 적용하고, ICSID 중재규칙을 해석하여 amicus curiae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문서 접근을 불허하면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만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진흙 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⁵⁰⁾

셋째로 Piero Foresti, Laura de Carli and Others v. Republic of South Africa 사건을 검토하겠다. 이 사건에서 5개 법률 관련 NGO는 2009년 이 사건 중재재판부에 비분쟁당사자로 참가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비분쟁당사자에 대한 서한에서 비분쟁당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문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⁵¹⁾ 이 사건은 절차가 중도에 종료되어서 비분쟁당사자 서면의견서가 본안판단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판정에서 비분쟁당사자 참여가 당사자의 권리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판정부에 유용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확인하였다.⁵²⁾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입장은 비분쟁당사자가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하여 서면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Biwater Gauff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에 비해 중재절차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을 보다 폭넓게 허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은 ICSID 중재판정부가 NGO에게 중재절차 문서에 대해 접근을 허용한 최초의 사례로 선례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⁵³⁾

이 밖에도 NGO가 ISDS 사건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신청한 사례는 다수

49) *Biwater Gauff (Tanzania) Ltd.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CSID Case No. ARB/05/22, Award (24 July 2008), pp. 101-112(para.359-392).

50) James Chalker, “Biwater Gauff (Tanzania)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sing Confidentiality to Undermine Meaningful Amicus-Curiae Participation” (2007) <https://www.josemigueljudicearbitration.com/xms/files/02_TEXTOS_ARBITRAGEM/09_Confidencialidade_e_Transparencia/chal ker_-2007_Bricks_Without_Straw_-biwater_vs_tanzania-.pdf> (2026.7.14. 최종방문).

51) *Piero Foresti, Laura de Carli and Others v. Republic of South Africa*, ICSID Case No. ARB(AF)/07/1, Letter Regarding Non-Disputing Parties (5 October 2009), p. 1.

52) *Piero Foresti, Laura de Carli and Others v. Republic of South Africa*, ICSID Case No. ARB(AF)/07/1, Award (4 August 2010), pp. 5-19-(para.28-82).

53) 아래 논문의 저자들은 이 사건 비분쟁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Jason Brickhill and Max Du Plessis, “Two’s Company, Three’s A Crowd: Public Interest Intervention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Piero Foresti V South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n Human Rights*, Vol.27, No.1 (2011), p. 160.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이 론스타 사건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신청하였다. 동 사건의 결정은 중재절차의 방해 및 과도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추후 본 논문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 이와 같은 ISDS 사건에서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관련 결정 동향도 주의 깊게 살펴야 향후 한국 투자협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대해 적절한 규율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ISDS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범 체계

가. ISDS의 주요 중재규칙상 *amicus curiae* 관련 규정

ISDS의 주요 중재규칙인 UNCITRAL 중재규칙과 ICSID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살펴보려 한다. 2021년 UNCITRAL 중재규칙에는 *amicus curiae*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21년 UNCITRAL 중재규칙 제17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재량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지체와 경비 발생을 피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할 수 있게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동 조항을 활용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허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⁵⁴⁾ 다만 2021년 UNCITRAL 중재규칙 제1조 제4항은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⁵⁵⁾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에서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서 *amicus curiae*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다. 동 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도 비분쟁당사국도 아닌 제3자가 서면의견서를

54)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21) Article 17

1. Subject to these Rule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duct the arbitration in such manner as it considers appropriate, provided that the parties are treated with equality and that at an appropriate stage of the proceedings each party is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of presenting its case. The arbitral tribunal, in exercising its discretion, shall conduct the proceedings so as to avoid unnecessary delay and expense and to provide a fair and efficient process for resolving the parties' dispute.

55)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21)

Article 1

4. For investor-State arbitration initiated pursuant to a treaty provi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ments or investors, these Rules include th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Rules on Transparency"), subject to article 1 of the Rules on Transparency.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4조 제2항은 서면의견서 제출을 위해서 중재판정부에 대한 신청, 중재언어로의 작성, 분량 제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제3자의 법적 지위, 분쟁당사자와의 모든 직·간접적인 관계, 재정적 지원 수령 여부, 중재절차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률문제 등을 밝혀야 한다고 보았다.⁵⁶⁾ 동 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중재판정부가 서면의견서 제출을 허가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분쟁당사자들과 다른 특별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하여 사실적·법률적 쟁점 판단에 기여하는 정도를 특히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4조 제4항은 서면의견서가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 제출일 기재, 대표자 서명, 간결성, 분량 준수, 명확성, 분쟁의 범위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⁵⁷⁾ 동 규칙 제4조 제5항에서 제

56)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Article 4. Submission by a third person

1.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isputing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allow a person that is not a disputing party, and not a non-disputing Party to the treaty ("third person(s)"), to file a written submission with the arbitral tribunal regarding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2. A third person wishing to make a submission shall apply to the arbitral tribunal, and shall, in a concise written statement, which is in a language of the arbitration and complies with any page limits set by the arbitral tribunal:
 - (a) Describe the third person, including, where relevant, its membership and legal status (e.g., trade association or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ts general objectives, the nature of its activities and any parent organization (including any organization that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the third person);
 - (b) Disclose any connection, direct or indirect, which the third person has with any disputing party;
 - (c) Provide information on any government, person or organization that has provided to the third person (i) any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preparing the submission; or (ii) substantial assistance in either of the two years preceding the application by the third person under this article (e.g. funding around 20 percent of its overall operations annually);
 - (d) Describe the nature of the interest that the third person has in the arbitration; and
 - (e) Identify the specific issues of fact or law in the arbitration that the third person wishes to address in its written submission.

57)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Article 4. Submission by a third person

3. I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such a submission, the arbitral tribunal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mong other factors it determines to be relevant:
 - (a) Whether the third person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 (b) The extent to which the submission would assist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a factual or legal issue related to the arbitral proceedings by bringing a perspective, particular knowledge or insigh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isputing parties.
4. The submission filed by the third person shall:

3자의 서면의견서가 중재절차 방해, 과도한 부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동 규칙 제4조 제6항은 분쟁당사자들이 서면의견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⁸⁾

그런데 한국은 BIT나 FTA에서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예컨대 한-바레인 BIT 제11조 제2항 나. 3)의 각주 6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제외하고는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⁹⁾ 한-호주 FTA의 2014년 4월 8일자 부속서한에서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NCITRAL 투명성 규칙은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하였다.⁶⁰⁾ 또한 한국은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 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이하 ‘모리셔스 협약’이라 함)의 당사국도 아니다.⁶¹⁾⁶²⁾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한국은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UNCITRAL 중재규칙을 적용할 때에도 UNCITRAL

- (a) Be dated and signed by the person filing the submission on behalf of the third person;
- (b) Be concise, and in no case longer than as authorized by the arbitral tribunal;
- (c) Set out a precise statement of the third person’s position on issues; and
- (d) Address only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58)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Article 4. Submission by a third person

- 5. The arbitral tribunal shall ensure that any submission does not disrupt or unduly burden the arbitral proceedings, or unfairly prejudice any disputing party.
- 6. The arbitral tribunal shall ensure that the disputing parties are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bservations on any submission by the third person.

59)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 2614호, 2025.7.31. 발효) (“한-바레인 BIT”).

60)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215호, 2024.12.12. 발효) (“한-호주 FTA”)

61) 모리셔스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투자협정을 일일이 제정·개정을 하지 않아도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모리셔스 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백지열, “한국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152호, 55면 (2021).

62) 한국의 모리셔스 협약 가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양준열, “대한민국의 모리셔스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가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연구 통권 제166호 (2025)를 참조.

UNCITRAL 투명성 규칙과 모리셔스 협약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이재민, “2014년 UNCITRAL 투명성 협약의 법적 쟁점 : 유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4호, 204~207면 (2014) 참조.

투명성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한국은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에 따른 일련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결국 특정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2022년 ICSID 중재규칙을 살펴보겠다. 동 규칙 제67조에서 amicus curiae의 서면의견서 제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서 amicus curiae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다. 동 규칙 제67조 제1항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인 ‘비분쟁당사자’(nondisputing party)가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서는 중재절차상 사용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 규칙 제67조 제2항은 이러한 서면의견서 제출을 허가할 때 분쟁의 범위 내인지, 다른 관점, 특별한 지식, 통찰로 사실적·법적 쟁점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분쟁당사자 혹은 ‘비분쟁당사국’(non-disputing Treaty Party)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정을 검토하라고 규율하고 있다.⁶³⁾ 동 규칙 제67조 제3항에서 이러한 서면의견서 제출의 허가 여부 및 제출 시 부과 조건에 관해 분쟁당사자가 의견을 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67조 제4항은 이러한 참여가 중재절차 방해, 과도한 부담, 부당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서면의견서 관련 “형식, 분량, 범위, 공개 여부 및 제출기한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⁶⁴⁾ 동 규칙 제67조 제5항에서 중재판정부가 마지막 서면의견서 제출

63) ICSID Arbitration Rules (2022)

Rule 67 Submission of Non-Disputing Parties

- (1) Any person or entity that is not a party to the dispute (“nondisputing party”) may apply for permission to file a written submission in the proceeding. The application shall be made in the procedural language(s) used in the proceeding.
- (2) In determining whether to permit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the Tribunal shall consider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 (a) whether the submission would address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 (b) how the submission would assist the Tribunal to determine a factual or legal issue related to the proceeding by bringing a perspective, particular knowledge or insigh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rties
 - (c) whether the non-disputing party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proceeding;
 - (d) the identity, activities, organization and ownership of the non-disputing party, including any direct or indirect affiliation between the non-disputing party, a party or a non-disputing Treaty Party; and
 - (e) whether any person or entity will provide the non-disputing party with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to file the submission.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이유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67조 제6항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하지 않는 한 비 분쟁당사자에게 중재절차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67조 제7항에서는 서면의견서 제출 허가시 이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의견 제출 권리를 규율하고 있다.⁶⁵⁾ 동 규칙의 한국에 대한 적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나.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관련 규정

일부 국가는 자국의 모델 BIT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Model BIT 중에서 *amicus curiae* 관련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amicus curiae* 관련 투자협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미국은 2021년 미국 모델 BIT 제28조 제3항과 제29조 제1항에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021년 미국 모델 BIT 제28조 제3항에서는 중재 판정부가 분쟁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접수·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⁶⁾

64) ICSID Arbitration Rules (2022)

Rule 67 Submission of Non-Disputing Parties

- (3)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observations on whether a non-disputing party should be permitted to file a written submission in the proceeding and on any conditions for filing such a submission.
- (4) The Tribunal shall ensure that non-disputing party participation does not disrupt the proceeding or unduly burden or unfairly prejudice either party. To this end, the Tribunal may impose conditions on the non-disputing party,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format, length, scope or publication of the written submission and the time limit to file the submission.

65) ICSID Arbitration Rules (2022)

Rule 67 Submission of Non-Disputing Parties

- (5) The Tribunal shall issue a reasoned decision on whether to permit a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within 30 days after the last written submission on the application.
- (6) The Tribunal shall provide the non-disputing party with relevant documents filed in the proceeding, unless either party objects.
- (7) If the Tribunal permits a non-disputing party to file a written submission, the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observations on the submission.

66) 2012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rticle 28: Conduct of the Arbitration

- 3. The tribunal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ccept and consider *amicus curiae* submissions from a person or entity that is not a disputing party.

둘째로 노르웨이는 2015년 노르웨이 모델 BIT 제18조 제3항과 제18조 제4항에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모델 BIT 제18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제출하는 서면의견서가 사실적·법적 쟁점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들로부터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접수·검토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에게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⁷⁾ 2015년 노르웨이 모델 BIT 제18조 제4항에서는 중재판정부가 관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⁸⁾

셋째로 네덜란드는 2019년 모델 BIT 제20조 제13항에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에서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적용됨을 밝히며, 제3자가 amicus curiae로서 서면의견서 제출 또는 구두진술을 요청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⁹⁾

넷째로 캐나다는 2021년 캐나다 모델 BIT 제36조 제1항에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에서 amicus curiae 용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적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가 amicus curiae 관련

67) Norway Model BIT (draft) 2015

Article [18]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3. The Tribunal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ccept and consider written amicus curiae submissions from a person or entity that is not a party to the dispute, provided that the Tribunal has determined that they are directly relevant to the factual and legal issues under consideration. The Tribunal shall ensure an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to the other Party, to submit comments on the written amicus curiae observations.

68) Norway Model BIT (draft) 2015

Article [18]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4. The Tribunal shall reflect submissions from the other Party and from amicus curiae in its award.

69) Netherlands model Investment Agreement (22 March 2019)

Article 20 Constitution and functioning of the Tribunal

13.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shall apply to disputes under this Section. The Tribunal and the disputing parties shall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 request from a third party to submit as an amicus curiae oral or written submis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se Rules. The Tribunal shall give the reasons for a decision to deny such request.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2021년 캐나다 모델 BIT는 간접적으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⁷⁰⁾

이를 종합하면 각국이 모델 BIT에서 *amicus curiae*에 대해 일률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자국의 모델 BIT에서 직접적으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자국의 모델 BIT에서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적용된다고만 규정하여 *amicus curiae*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네덜란드는 자국의 모델 BIT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한편,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규율하고 있다. 노르웨이 모델 BIT는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네덜란드 모델 BIT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넘어서 구두 진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요청을 거부할 때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점이 특색이 있다.

이어서 FTA 및 투자조항 포함 조약에서도 *amicus curiae* 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살펴해보겠다. 첫째로 2003년에 체결된 미국-싱가포르 FTA 제15.19조 제3항과 제15.20조 제1항에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싱가포르 FTA 제15.19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영역 내의 모든 개인·단체와 영역 밖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단체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접수·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¹⁾

둘째로 2015년에 체결된 호주-중국 FTA 제9.16조 제3항, 제4항에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호주-중국 FTA 제9.16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분쟁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70) 2021 Model FIPA

Article 37: Participation of a Non-Disputing Party

1.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participation of a non-disputing Party in proceedings under this Section, except as modified by this Agreement.

71) United States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rticle 15.19 : Conduct of the Arbitration

3. The tribunal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ccept and consider *amicus curiae* submissions from any persons and entities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nd from interested persons and entities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관점, 전문 지식, 통찰력을 제공하여 사실상·법률상 쟁점 판단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분쟁의 범위 내의 사항을 다루는지 여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⁷²⁾ 호주-중국 FTA 제9.16조 제4항에서 이러한 의견서는 작성자, 분쟁당사자와의 직·간접적 관계,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견서는 분량 제한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면서 중재절차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들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³⁾

셋째로 2016년에 체결된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하 ‘CETA’라 함) 제8.36조에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CETA 제8.36조에서는 ISDS에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⁴⁾

72)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9.16: Conduct of the Arbitration

3. With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disputing parties, the tribunal may allow a party or entity that is not a disputing party to file a written amicus curiae submission with the tribunal regarding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I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such a filing, the tribunal shall consider, among other things, the extent to which:

- (a)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would assist the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a factual or legal issue related to the proceeding by bringing a perspective, particular knowledge, or insigh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isputing parties;
- (b)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would address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and
- (c) the amicus curiae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proceeding.

73)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ticle 9.16: Conduct of the Arbitration

4. Each submis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identify the author, disclose any affiliation, direct or indirect, with any disputing party, and identify any person, government, or other entity that has provided, or will provide, any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preparing the submission. Each submission shall be in a language of the arbitration, and comply with any page limits and deadlines set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shall ensure that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does not disrupt the proceeding or unduly burden or unfairly prejudice either disputing party, and that the disputing parties are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bservations on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넷째로 2018년에 체결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라 함) 제9.23조 제3항, 제9.24조 제1항에서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CPTPP 제9.23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에 분쟁당사자가 아닌 개인, 단체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분쟁의 범위에 속하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 또는 법률문제 관련 분쟁당사자들의 주장 및 논거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의견서에서 분쟁당사자와의 직접적, 간접적 관계,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의견서가 분량 제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면서 중재절차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의 *amicus curiae* 의견서에 대한 답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의견서가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과도한 부담 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⁷⁵⁾

이를 종합하면 FTA 및 투자조항 포함 조약에서도 *amicus curiae*에 관하여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싱가포르 FTA는 미국, 싱가포르의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더라도,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도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호주-중국 FTA는 *amicus curiae* 서면의

74)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between Canad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rticle 8.36 Transparency of proceedings

1. The UNCITRAL Transparency Rules, as modified by this Chapter, shall apply in connection with proceedings under this Section.

75)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Article 9.23: Conduct of the Arbitration

3.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isputing parties, the tribunal may accept and consider written *amicus curiae* submissions regarding a matter of fact or law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that may assist the tribunal in evaluating the submissions and arguments of the disputing parties from a person or entity that is not a disputing party but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l proceedings. Each submission shall identify the author; disclose any affiliation, direct or indirect, with any disputing party; and identify any person, government or other entity that has provided, or will provide, any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preparing the submission. Each submission shall be in a language of the arbitration and comply with any page limits and deadlines set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shall provide the disputing parties with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such submissions. The tribunal shall ensure that the submissions do not disrupt or unduly burden the arbitral proceedings, or unfairly prejudice any disputing party.

견서 제출을 허가할 때 분쟁당사자들이 서면 동의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분쟁당사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호주-중국 FTA 규정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접수 및 검토를 위해서 단순히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라고 한 CPTPP 규정보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더 엄격한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CETA는 2021년 캐나다 모델 BIT와 마찬가지로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의 제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특색이 있다. 또한 호주-중국 FTA와 CPTPP는 모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실적·법률적 쟁점 판단이나 평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작성 언어, 분량 제한 및 제출 기한, 분쟁당사자들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답변의 기회 부여, 분쟁당사자와의 직·간접적 관계, 재정적 지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다른 FTA나 투자조항 포함 조약에 비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의 요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여러 요건이 부과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의 주요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첫째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은 분쟁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 제4항, ICSID 중재규칙 제67조 제2항, 호주-중국 FTA 제 9.16조 제3항, CPTPP 제9.23조 제3항에도 반영되어 있다. 분쟁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는 엄격하게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논리적으로 필요하며, 중재판정부의 권한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⁷⁶⁾ UPS v. Canada 사건에서 amicus curiae는 하나의 분쟁을 다른 분쟁으로 바꿀 수 없으며, 그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⁷⁷⁾

76) Eric De Brabandere, "Amicus Curiae: Investment Arbitrat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display/10.1093/law-mpeipro/e3030.013.3030/law-mpeipro-e3030?rskey=Uk6pRr&result=1&prd=MPIL>> (2026. 7. 11. 최종방문).

77)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 v. Government of Canada*, ICSID Case No. UNCT/02/1, Decision of the Tribunal on Petitions for Intervention and Participation as Amici Curiae (17 October 2001), p. 24(para. 59-60).

둘째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은 사실적·법률적 쟁점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앞서 살펴본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 제3항, ICSID 중재규칙 제67조 제2항, 호주-중국 FTA 제9.16조 제3항, CPTPP 제9.23조 제3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과 같은 참여가 중재판정부에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여가 없다면 *amicus curiae* 참여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절차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⁷⁸⁾ *Resolute Forest v. Canad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신청한 두 명의 학자에 대해 그들이 경험과 지식이 많지만 양 당사자가 숙련된 소송대리인에 의해 변호를 받고 있으므로 중재판정부에 분쟁당사자와 다른 관점이나 통찰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사실적·법률적 쟁점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다.⁷⁹⁾ 이와 달리 *Apotex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공익 문제에 있어 분쟁당사자와 다른 전문지식, 경험, 또는 시각의 요건은 중재판정부가 가능한 넓은 견해를 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아, 사실적·법률적 쟁점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판단했다.⁸⁰⁾

셋째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앞서 살펴본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 제3항, ICSID 중재규칙 제67조 제2항, 호주-중국 FTA 제9.16조 제3항, CPTPP 제9.23조 제3항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요건은 단순히 일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⁸¹⁾ *Resolute Forest v. Canad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법치주의, 국제공법, *Pacta sunt servanda* 원칙(“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의 존중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 이 중재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⁸²⁾

78) Gary Born and Stephanie Forrest, *supra* note 10, p. 648.

79) *Resolute Forest Products Inc. v.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2016-13, Procedural Order No. 6 on the Participation of Prof. Robert Howse and Mr. Barry Appleton as Amici Curiae (29 June 2017), p. 7(para.4.4).

80) *Apotex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UNCT/10/2, Procedural Order No. 2 on the Participation of a Non-Disputing Party (11 October 2011), p. 8(para.22).

81) Eric De Brabandere, “Amicus Curiae: Investment Arbitrat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https://opil.ouplaw.com/display/10.1093/law-mpeipro/e3030.013.3030/law-mpeipro-e3030?rkey=Uk6pRr&result=1&prd=MPIL>> (2026. 7. 11. 최종방문).

넷째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이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건은 앞서 살펴본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 제5항, ICSID 중재규칙 제67조 제4항, 호주-중국 FTA 제 9.16조 제4항, CPTPP 제9.23조 제3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요건을 단순한 고려 요소나 판단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장치로서 보아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과 혜택을 비교하고, 절차적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⁸³⁾ 추후 자세히 살펴볼 한국의 론스타 사건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이 불허된 바 있다.⁸⁴⁾

이 밖에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부과되어 있다. 향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위한 규범적 방향을 검토할 때 어떠한 요건이 적절한지, 어느 정도까지 요건을 부과해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한국 투자협정 및 ISDS 사건에서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법적 검토

1. 한국 투자협정의 규율 현황

가. FTA

한국 FTA의 ISDS 관련 amicus curiae 규정을 살펴보겠다.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서는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FTA 추진현황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따르면 총 23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다.⁸⁵⁾ 발효된 한국 FTA를 대상으로 ISDS 관련 amicus curiae 규정의 포함 여부

82) *Resolute Forest Products Inc. v.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2016-13, Procedural Order No. 6 on the Participation of Prof. Robert Howse and Mr. Barry Appleton as Amici Curiae (29 June 2017), p. 8(para.4.6).

83) Gary Born and Stephanie Forrest, *supra* note 10, p. 653.

84) *LSF-KEB Holdings SCA et al.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Procedural Order No. 15, Decision on Minbyun's Non-disputing Party Application (21 December 2015), pp. 6-8(para.21-28).

85) FTA의 개수를 셀 때 국가별로 여러 개의 FTA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1개로 산정하였다. FTA 강국,

를 검토한 결과, 총 5개의 FTA가 ISDS 관련 *amicus curiae*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⁸⁶⁾ 이는 비율로 따지면 약 22%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국 FTA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amicus curiae* 조항은 FTA의 투자 챕터에 들어가 있고, FTA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본문과 부속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 FTA의 ISDS 관련 *amicus curiae* 규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로 한-미국 FTA, 한-호주 FTA에서 규정된 ISDS 관련 *amicus curiae* 규정의 형태이다. 한-미국 FTA 제11.20조 제5항과 한-호주 FTA 제11.20조 제5항에서 ISDS 관련 *amicus curia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문구는 동일하다. 두 조항은 모두 제11장 투자 챕터 본문에 규정되어 있다. 한-미국 FTA 제11.20조 제5항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들과 협의 후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나 실체가 분쟁의 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 견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중재판정부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으로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가목),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나목),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다목)를 들고 있다. 나아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의 제출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부당한 부담 또는 불공정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분쟁당사자들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⁷⁾

KOREA 홈페이지 중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https://fta.motir.go.kr/ftamain/kfta/ov/>> (2026.7.7. 최종방문).

86)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081호, 2012.3.15. 발효) (“한-미국 FTA”); ②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215호, 2024.12.12. 발효) (“한-호주 FTA”); ③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271호, 2015.12.20. 발효) (“한-뉴질랜드 FTA”); ④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431호, 2019.10.1. 발효) (“한-중미5개국 FTA”); ⑤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524호, 2022.12.1. 발효) (“한-이스라엘 FTA”).

8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0조

5.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둘째로 한-뉴질랜드 FTA의 ISDS 관련 amicus curiae 규정의 형태이다. 한-뉴질랜드 FTA 제10.26조 제1항에서 ISDS 관련 amicus curiae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10장 투자 챕터 본문에 규정되어 있다. 한-뉴질랜드 FTA 제10.26조 제1항에서 중재판정부가 분쟁 당사자가 아닌 인 또는 실체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수용·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입장 제출을 수용할지 결정할 때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중재판정부가 분쟁 당사자들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⁸⁸⁾

셋째로 한-중미 5개국 FTA의 ISDS 관련 amicus curiae 규정의 형태이다. 한-중미 5개국 FTA 제9.21조 제3항과 부속서 9-사에서 ISDS 관련 amicus curia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은 모두 제9장 투자 챕터에 규정되어 있다. 한-중미 5개국 FTA 제9.21조 제3항의 내용은 “부속서 9-사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 앞서 살펴본 한-미국 FTA 제11.20조 제5항과 동일하다.⁸⁹⁾ 한-중미 5개국 FTA 부속서 9-사 제1항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는 날짜, 이해관계인이나 대표자의 서명, 그러한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88)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6조

1.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분쟁당사자가 아닌 인 또는 실체로부터 수용하고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입장제출 수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고려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서면입장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9)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1조

3.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부속서 9-사에 따라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
 -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도록 보장한다.

야 하고(가목), 의장에게 보내지고 선정된 언어로 분쟁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나목), 분량 제한이 있어서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다목)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중미 5개국 FTA 부속서 9-사 제2항은 준비서면이 법인의 설립지, 자연인의 주소, 활동 성격, 자금조달 출처, 적절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서류,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가목),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여를 받았는지 여부, 분쟁당사자와의 직접적·간접적 관계(나목), 절차에 관한 사실적·법적 쟁점의 판단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요약(다목)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미 5개국 FTA 부속서 9-사 제3항에서 상기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⁰⁾

넷째로 한-이스라엘 FTA의 ISDS 관련 *amicus curiae* 규정의 형태이다. 한-이스라엘 FTA 제9.23조 제3항과 부속서 9-바에서 ISDS 관련 *amicus curia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은 모두 제9장 투자 챕터에 규정되어 있다. 한-이스라엘 FTA 제9.23조 제3항의 내용은 ‘부속서 9-바(외부조언자)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 앞서 살펴본 한-미국 FTA 제11.20조 제5항과 동일하다.⁹¹⁾ 한-이스라엘 FTA 부속서 9-바 제1항에서 한-중미 5개

90)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사 외부조언자

중재판정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의 자연인이나 당사국들의 영역 내에 설치된 법인으로부터 외부조언자 준비서면을 접수할 수 있다.

1.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그 준비서면은

- 가. 날짜가 기재되고,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표자에 의하여 서명되며, 그러한 인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 나. 의장에게 보내고, 분쟁당사자들에 의하여 선정된 언어나 언어들로 분쟁당사자들에게 또한 전달된다. 그리고
- 다.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그 준비서면은 다음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서면 선언을 수반한다.

- 가. 법인의 경우 그 설립지, 그리고 자연인의 경우 주소, 활동의 성격, 자금조달의 출처, 그리고 적절한 경우, 앞서 언급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준비서면을 제시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 나. 이해관계인이 일반적으로 또는 준비서면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분쟁당사자, 다른 정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여를 받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분쟁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 다. 이해관계인의 준비서면이 중재판정부가 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

3. 중재판정부는 상기 규칙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외부조언자 준비서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국 FTA 부속서 9-사 제1항과 동일하게 의견서가 낱자, 이해관계인이나 대표자의 서명, 그러한 사람의 연락처정보를 포함해야 하고(가목), 분량 제한이 있어서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다목)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이스라엘 FTA 부속서 9-바 제1항 나목에서 의장에게 보내지고 선정된 언어로 분쟁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간접적 제후관계에 대해 공개하고, 서면 준비에 재정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할 실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중미 5개국 FTA 부속서 9-사 제1항과 차이가 있다. 한-이스라엘 FTA 부속서 9-바 제2항은 앞서 살펴본 한-중미 5개국 FTA 부속서 9-사 제2항과 내용이 동일하다. 한-이스라엘 FTA 부속서 9-바 제3항에서 상기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amicus curiae의 서면의견서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중미 5개국 FTA 부속서 9-사 제3항과 달리 준비서면이 아닌 ‘의견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둘 다 영문에서는 ‘briefs’에 해당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번역 차이일 뿐으로 보인다.⁹²⁾

91)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3조

3.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부속서 9-바(외부조언자)에 따라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
 -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92)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바 외부조언자

중재판정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의 자연인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외부조언자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1.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그 의견서는

- 가.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표자에 의하여 낱자가 기재되고 서명되며, 그러한 인의 연락처정보를 포함한다.
- 나. 모든 분쟁당사자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후관계를 공개하고 그 서면입장을 준비하는 데 재정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할 모든 인, 정부 또는 그 밖의 실체를 기재한다. 의장에게 보내지고, 분쟁당사자들에게 의하여 선정된 언어나 언어들로 분쟁당사자들에게 또한 전달된다. 그리고
- 다.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그 의견서는 다음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서면 선언을 수반한다.

나. BIT

한국 BIT의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6월 기준 총 101개 국가와 BIT를 체결하였다. 그 중 85개가 발효되고, 4개가 미발효이고, 12개가 종료되었다.⁹³⁾ 현재 발효 중인 85개의 한국 BIT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BIT는 하나도 없었다. 이는 몇몇 한국 FTA에서 *amicus curiae*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나라의 모델 BIT 문안이나 실제로 체결한 BIT에서도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BIT에 반드시 *amicus curiae* 규정을 두어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 ISDS의 근거가 되는 투자협정이 BIT일 수도 있고 FTA일 수도 있으므로 투자협정이 BIT인지 FTA인지에 따라 *amicus curiae* 관련 규정의 포함 여부가 달라져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다만 ISDS의 근거 협정이 BIT라고 하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에 따라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한-바레인 BIT 제11조 제2항 나에서 ICSID 협약, ICSID 추가절차규칙, UNCITRAL 중재규칙,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⁴⁾ 이 경우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허용 여부에 대한 협정상의 근거는 없지만,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가. 법인의 경우 그 설립지, 그리고 자연인의 경우 주소, 활동의 성격, 자금조달의 출처, 그리고 적절한 경우, 앞서 언급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 나. 이해관계인이 일반적으로 또는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분쟁당사자, 다른 정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여를 받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분쟁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서가 중재판정부가 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
3. 중재판정부는 상기 규칙에 합치하지 않는 외부조언자 의견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93)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 ‘우리나라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2026.6. 기준)’ <https://www.mofa.go.kr/www/brd/m_4059/view.do?seq=36593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_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26.7.5. 최종 방문).
- 94)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 2614호, 2025.7.31. 발효) (“한-바레인 BIT”).

다. 투자조항 포함 조약

이 밖에도 한국의 투자조항 포함 조약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유엔 회원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UN Trade & Development에 투자협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UN Trade & Development 홈페이지의 Investment Policy Hub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투자 조항 포함 조약’(Treaties with Investment Provisions)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조항 포함 조약은 발효된 조약을 기준으로 총 28개이다.⁹⁵⁾ 이들 가운데 FTA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조약을 제외하면 1)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2)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3)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이 추가로 있다.⁹⁶⁾ 이 세 가지 협정을 검토하면 ISDS 자체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대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2. 한국 ISDS 사건의 분석

가. 개요 및 론스타 사건

한국이 피청구국이 된 투자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UN Trade & Development 홈페이지의 Investment Policy Hub에서 2025년 12월 31일 업데이트 기준 한국이 피청구국으로 등록된 ISDS 사건은 총 10건이다.⁹⁷⁾ 이러한 ISDS 사건에 관하여 개별 사건별로 ICSID 홈페이지의 ‘Case Database’, PCA 홈페이지의 ‘Cases’, 법무부 홈페이지의 ‘투자분쟁 관련 자료’에 나온 공개 자료를 검토하

95) UN Trade & Development 홈페이지의 ‘Investment Policy Hub’ 중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Navigator’ 한국 관련 부분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ternational-investment-agreements/countries/111/korea-republic-of>> (2026.7.6. 최종방문).

9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조약 2184호, 2014.6.1. 발효);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조약 2568호, 2024.4.17. 발효);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조약 2590호, 2024.12.6. 발효).

97) 간단한 사건명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Lone Star and others v. Korea, ② Hanocal and IPIC International v. Korea, ③ Dayyani v. Korea, ④ Seo v. Korea, ⑤ Schindler v. Korea, ⑥ Mason v. Korea, ⑦ Elliott v. Korea, ⑧ Min v. Korea, ⑨ Won v. Korea, ⑩ Dayyani and others v. Korea (II). UN Trade & Development 홈페이지의 ‘Investment Policy Hub’ 중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Navigator’ 한국 관련 부분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country/111/korea-republic-of>> (2026.7.9. 최종방문).

고, 기타 언론보도 등을 검색한 결과 한국 ISDS 사건에서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이 직접적으로 쟁점이 된 사례는 현재까지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사건’(이하 ‘론스타 사건’이라 함)이 유일한 사례로 보인다.⁹⁸⁾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향후 한국이 투자협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 사건은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11.2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7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신·구 한-벨·룩 BIT를 근거로 제기되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과세 조치가 이러한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⁹⁹⁾¹⁰⁰⁾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30일 피청구국 대한민국이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하였다.¹⁰¹⁾ 중재판정부는 2023년 5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동 사건에서 과다 산정된 배상원금 및 이자의 중복 계산 등을 이유로 배상원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48만 1,318 달러를 감액하였다.¹⁰²⁾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9월 동 사건에서 정부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ICSID 취소위원회는 2025.11.18. 정부 측 취소신청을 인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 약 4,000억 원 상당을 소급하여 소멸시켰다.¹⁰³⁾

98) ICSID 홈페이지 중 ‘Cases Database’ <<https://icsid.worldbank.org/cases/case-database>> (2026.7.9. 최종방문); PCA 홈페이지 중 ‘Cases’ <<https://pca-cpa.org/cases/>> (2026.7.9. 최종방문); 법무부 홈페이지 중 ‘투자분쟁 관련 자료’ <<https://www.moj.go.kr/moj/220/subview.do>> (2026.7.9. 최종방문).

99) 대한민국과 벨지움, 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조약 583호, 1976. 9.3. 발효, 2011.3.27. 종료)(구 “한-벨·룩 BIT”);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 2038호, 2011.3.27. 발효) (신 “한-벨·룩 BIT”).

100)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Award (30 August 2022), pp. 1-4(para.1-8);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1면, 2025.11.19.

101)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Award (30 August 2022), p. 357(para.948).

102)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1~2면, 2023.5.9.

103)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1~2면, 2025.11.19.

나. amicus curiae 구술심리 참석

론스타 사건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복잡하므로 amicus curiae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구술심리 참석 문제를 살펴보겠다. 민변의 국제통상위원회는 ICSID 중재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5월 7일자, 2015년 11월 16일자 서한을 통해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구술심리 절차의 참석을 요청하였다.¹⁰⁴⁾ 2006 ICSID 중재규칙 제32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 대리인, 증인, 전문가가 아닌 자가 심리에 참석을 허용하려면 어느 한 분쟁당사자라도 반대를 하지 아니하여야 했다.¹⁰⁵⁾ 하지만 동 사건의 분쟁당사자들은 심리에 제3자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고,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민변의 요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¹⁰⁶⁾

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다음으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부분을 검토하겠다. 민변은 2015년 11월 30일 ICSID 중재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비분쟁당사자로서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¹⁰⁷⁾ 이러한 신청서는 중재판정부와 분쟁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

104) 민변은 1987년 민주화를 열망하며 1988년 5월 28일 변호사들에 의해 창립된 단체이다. 민변에서는 초창기에는 국가보안법 등 형사사건을 주로 관여하였으나 이후 환경, 소수자 인권, 국제통상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약 1,20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중 ‘소개’ <https://www.minbyun.or.kr/?page_id=65> (2026.7.10. 최종방문).

105) 2006 ICSID Arbitration Rules Rule 32(2)

106) *LSF-KEB Holdings SCA et al.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Procedural Order No. 15, Decision on Minbyun’s Non-disputing Party Application (21 December 2015), p. 1(para.1).

107) ICSID Arbitration Rules (2006)

Rule 37

(2) After consulting both parties, the Tribunal may allow a person or entity that is not a party to the dispute (in this Rule called the “non-disputing party”) to file a written submission with the Tribunal regarding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I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such a filing, the Tribunal shall consider, among other things, the extent to which:

(a)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would assist the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a factual or legal issue related to the proceeding by bringing a perspective, particular knowledge or insigh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isputing parties;

(b)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would address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c) the non-disputing party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proceeding.

The Tribunal shall ensure that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does not disrupt the proceeding or unduly burden or unfairly prejudice either party, and that both parties are given an opportunity to

고,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에게 민변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분쟁당사자들은 2015년 12월 11일 각각 민변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¹⁰⁸⁾

민변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첫째로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므로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둘째로 론스타는 신 한-벨·룩 BIT 제8조 제2항에 따른 권리 포기를 하지 않은 채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¹⁰⁹⁾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론스타가 한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 중이라는 대법원 자료를 공증하여 제출하였다. 나아가 민변이 “법치주의와 한국 법원 및 국제중재판정부 간 권한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¹¹⁰⁾

이에 청구인 론스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변의 신청에 반대하였다. 첫째로 민변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이 중재판정부가 사실적·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민변이 은행업, 은행법, 조세법, BIT 등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민변이 제기한 두 쟁점은 이미 피청구국에 의하여 언급되었다고 하였다.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은행법상 쟁점 관련 사실적 증거와 전문가 보충 의견을 새롭게 모으는 것이 최종 심리 직후에 부담이 된다고 보았다. 둘째로 청구인은 민변이 분쟁의 범위 밖 쟁점을 언급한다고 하였다. 분쟁당사자들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문제는 분쟁당사자들의 분쟁 중인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였다. 비록 분쟁당사자들 간 포기(waiver)

present their observations on the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108) *LSF-KEB Holdings SCA et al.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Procedural Order No. 15, Decision on Minbyun's Non-disputing Party Application (21 December 2015), p. 1(para.2).

109)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조약 2038호, 2011.3.27. 발효) 제8조

2.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110) Minbyun, Request for an Amicus Curiae Written Submission as Non-disputing Party According to the ICSID Rule 37(2) on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30 November 2015), pp. 1-6; *LSF-KEB Holdings SCA et al.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Procedural Order No. 15, Decision on Minbyun's Non-disputing Party Application (21 December 2015), pp. 1-3 (para.3-7); 민변, [민변/국제통상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재판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제출, 2015.12.1.

문제가 다투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민변이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로 청구인은 민변이 해당 중재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민변이 주장하는 일반화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넷째로 민변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론스타 사건은 최소한 2012년 7월부터 광범위하게 언론 보도가 되었는바, 민변이 심리의 최종 단계에서 한 달 정도 남은 막판에 이러한 신청서를 내면, 중재절차를 방해하고 과도한 부담과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¹¹¹⁾

또한 피청구국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가 모든 관련 주장과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변의 신청을 반대하였다. 첫째로 피청구국은 기존 투자중재 판정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청구인의 주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항변을 제기해 왔다고 하였다. 둘째로 민변이 사실적·법적 주장 및 증거를 자세히 담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면 제3차 구술심리를 포함하여 동 사건의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¹¹²⁾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변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첫째로 민변의 요청을 허가하는 것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민변의 신청은 제3차이자 마지막 구술심리 절차가 2016년 1월 5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훨씬 전에도 제출될 수 있었는데, 매우 늦게 제출되었다고 하였다. 분쟁당사자들이 민변의 서면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논평을 하려면 제3차 구술심리가 지연되거나 제4차 구술심리가 새로 잡혀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2006년 ICSID 중재규칙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재절차의 방해, 분쟁당사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및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둘째로,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분쟁당사자들, 특히 피청구국의 전문가, 소송대리인과 “중대하게 다른”(materially different) 특별한 지식이나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111) 청구인의 2015년 12월 11일자 서한 중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나, 해당 서한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LSF-KEB Holdings SCA et al.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Procedural Order No. 15, Decision on Minbyun’s Non-disputing Party Application (21 December 2015), pp. 3-5(para.8-17)에서 재인용.

112) 피청구국의 2015년 12월 11일자 서한 중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나, 해당 서한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Ibid.*, pp. 5-6(para.18-20)에서 재인용.

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이러한 중재절차에서 요구되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¹¹³⁾¹¹⁴⁾

민변은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사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12월 30일 민변 수정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¹¹⁵⁾ 이와 관련하여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막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한국 정부와 싸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재판부 의견에 따르되 의견서 제출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며, “정부 태스크포스팀(T/F), 로펌 등과 어떻게 답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러 논의를 한 끝에 그런 결론을 냈다.”고 설명하였다.¹¹⁶⁾ 결국 민변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은 론스타 사건에서 허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론스타 사건의 민변 사례는 국제투자법 관련 외국 문헌에서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이 분쟁당사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로 소개되기도 한다.¹¹⁷⁾

113) *Ibid.*, pp. 6-8(para.21-28).

114) 중재판정부는 서면의견서의 늦은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엄격한 제출기한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제출 시기에 관한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Third-Party Participa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11 June 2026), p. 36(para.116).

115) 민변, [수정보도자료/국제통상위]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 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2015.12.30.

116) 이순혁, “‘론스타 소송은 협정 위반’ 민변 의견서, 한국에 유리한데도 정부가 제출 반대”, 한겨레, 2015. 12. 3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192.html (2026.7.10. 최종방문).

117) Jeffery P. Commission and Rahim Moloo, *Procedural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 98; Gary Born and Stephanie Forrest, *supra* note 10, pp. 653-654.

IV.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1.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규정의 문제점

가. 법적 공백

한국은 ISDS에서 NGO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규범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은 ISDS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서면의견서의 제출은 중재절차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공익을 증진하며,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NGO 등이 중재판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외부에서 행사하기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국이 투자협정상 일부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여 절차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한국은 이미 일부 FTA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투자협정을 살펴보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법적 공백이 상당하다. 먼저 2026년 6월 기준 발효된 85개의 BIT에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투자조항 포함 조약에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와 달리 FTA에서는 2026년 7월 기준 발효된 23개 FTA 중 5개 FTA에만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¹¹⁸⁾

이러한 한국의 현 상황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ISDS의 근거 협정이 BIT인지, FTA인지에 따라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조항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 투자협정에 ISDS가 규정되어 있다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의 필요성은 투자협정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즉, FTA에서는 필요하지만 BIT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BIT에서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모델 BIT에서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 BIT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협정 규정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18) 한-미국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중미 5개국 FTA, 한-이스라엘 FTA.

다음으로 한국 FTA에서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조항의 포함 여부가 협정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미 5개국, 이스라엘과의 FTA에서만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이 필요하고,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FTA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협정 상대국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으니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미국 FTA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조항이 처음 포함된 이후 한국의 신규 체결 및 개정 FTA에 해당 규정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자협정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amicus* 서면의견서 제출이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ICSID 중재규칙이 적용되면 해당 규칙에 따라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가 UNCITRAL 중재규칙상 중재판정부의 절차 운영 권한을 근거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협정상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NGO와 같은 비분쟁당사자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가능성, 허가 기준, 서면의견서의 형식 요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전적으로 적용되는 중재규칙과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¹¹⁹⁾ 그 결과 한국의 투자분쟁에서 NGO가 제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전문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

나. 비밀관성

한국 FTA에 이미 포함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도 협정별로 내용상 편차가 커서 일관성이 떨어진다.¹²⁰⁾ 기본적으로 공통된 내용도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5개의

119) 현재 *amicus curiae* 제도는 권리보유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 Robin M. Kelly, "Bridging the Private-Public Divid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Can Retrofitting Amicus Curiae Improve How Tribunals Consider Human Rights Issues?", *Cambridge Law Review*, Vol.9, No.2 (2024), p. 47.

120) *amicus curiae*에 관한 규정이 조약마다 달라서 중재판정의 비밀관성을 심화시키고, 투자분쟁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Adaeze Agatha Aniodoh, "Amicus Curiae and Public Welfare: Bridging the Gap

한국 FTA에서는 모두 일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중재판정부의 amicus curiae 허용 권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지 여부, 분쟁당사자들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이 대한 대응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뉴질랜드 FTA를 제외하고 한-미국 FTA, 한-호주 FTA, 한-중미5개국 FTA, 한-이스라엘 FTA에서 모두 일부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인지 여부, 사실적·법적 쟁점 판단에 도움되는 정도, 분쟁당사자들과의 협의, 중재절차의 방해, 부당한 부담, 불공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중미5개국 FTA와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다른 FTA에 없는 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두 FTA에서는 날짜 기재, 대표자 서명, 대표자 연락처, 서면의견서를 의장 및 분쟁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 중재절차 언어 요건, 간결성, 15페이지 분량 제한, 법인 설립지, 자연인 주소, 활동 성격, 자금조달의 출처, 확인서류,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재정적 기여, 이해관계인의 분쟁당사자와의 관계, 사실적·법적 쟁점에 도움될지 여부에 관한 요약, 규칙에 맞지 않은 서면의견서의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두 FTA는 본문 외에도 부속서를 활용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밖에도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분쟁당사자와의 제휴관계와 재정적 기여 등을 한 인, 정부, 그 밖의 실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FTA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 비교

	한-미국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중미5개국 FTA	한-이스라엘 FTA
중재판정부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허용 권한	○	○	○	○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지 여부	○	○	○	○
분쟁당사자들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대한 대응 기회	○	○	○	○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인지 여부	○	×	○	○
사실적·법적 쟁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	○
중재절차 방해, 부당한 부담, 불공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	×	○	○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	×	○	○
15쪽 분량 제한	×	×	○	○
규칙에 맞지 않은 서면의견서의 처리	×	×	○	○

Between Legal Expertise and Public Interest in Investment Arbitration,”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22, No.2 (2025), p. 192.

	한-미국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중미5개국 FTA	한-이스라엘 FTA
중재절차 언어 요건	×	×	○	○
재정적 기여	×	×	○	○
이해관계인의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	×	×	○	○
분쟁당사자와의 제휴관계	×	×	×	○
재정적 기여 등을 한 인, 정부, 그 밖의 실체	×	×	×	○

FTA의 내용에는 상대방 측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고, FTA의 특정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FTA의 특정 조항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국 FTA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은 협정마다 내용의 편차가 커서 NGO와 같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입장에서 일관된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충분성

다른 국가의 투자협정, 주요 중재규칙 및 ISDS 사건 등을 분석해 보면 한국 투자협정상 일부 미흡한 부분도 발견된다. 우선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중재절차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Biwater Gauff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에서 신청인의 중재절차 문서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작성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달리 *Piero Foresti, Laura de Carli and Others v. Republic of South Africa* 사건에서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중재절차 문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NGO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통해 중재판정부에 사실적·법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중재절차의 문서에 대한 접근이 일정 부분 허용되어야 한다. NGO가 특정 중재절차의 문서조차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심층적인 의견이나 관점을 제시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은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ISDS 관련 문서를 항상 공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¹²¹⁾ 다만 투자분쟁에서 기밀성도 중요

121)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백지열, “한국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152호 (2021) 참조.

법무부 홈페이지 중 ‘투자분쟁 관련 자료’에서 한국의 투자분쟁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한 가치이기 때문에 중재절차의 모든 문서를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매년 공개할 수는 없다.¹²²⁾ 만약 모든 문서의 공개가 강요된다면 투자자는 ISDS 절차를 이용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 등을 절충한 결과 2022년 ICSID 중재규칙 제67조 제6항에서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하지 않는 한 비분쟁당사자에게 제출된 중재절차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투자협정에서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작성을 위한 중재절차 자료 접근에 대해 어디까지 허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²³⁾

또한 한국 투자협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신청과 관련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 투자협정에서 중재판정부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결정 시 고려 요소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NGO 등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2022년 ICSID 중재규칙 제67조 제5항에서는 결정에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결정 시기도 마지막 서면의견서 제출 시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모델 BIT 제20조 제13항에서도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투자협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결정을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된다.

<<https://www.moj.go.kr/moj/22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NdM5JTJGYXJ0Y2xMaXN0LmRvJTNGcmdzQmduZGVtdHlM0QIMjZiYnNDbFNlcSUzRCUyNnJnc0VuZGRlU3Ry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IJTl2cGFnZSUzRDE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3JjaENvbHVtbiUzRCUyNnNyY2hXcmQIM0QIMjY%3D>> (2026.7.16. 최종방문).

122) ISDS는 공익을 위한 정부 조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사중재의 원칙인 중재절차의 비공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제4판)』(박영사, 2022), p. 747.

123)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과 진행 중인 소송 자료와 심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 중재판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소송 지연, 과도한 비용의 발생, 영업 비밀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인숙, “FTA ISD 소송절차상 투명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제120호, 34면 (2014) 참조.

2.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규정의 정비 방향

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명시적 규정 도입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 BIT에서 이러한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의 모델 BIT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신규 BIT를 체결할 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 기존 BIT를 개정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BIT 개정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만을 넣기 위해 BIT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기존의 BIT를 개정할 수요가 있을 때 같이 *amicus curiae* 부분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의정서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반영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은 1994년 12월 30일에 발효된 한-루마니아 BIT를 2008년 1월 11일에 발효된 한-루마니아 BIT 개정의정서로 필요한 부분만 일부 개정한 사례가 있다.¹²⁴⁾ 이러한 방법은 개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기존 BIT의 다른 조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기존 BIT를 전면 개정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개정의정서의 방식에 비해 노력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기존 BIT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은 협정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은 1967년 1월 15일에 발효된 한-독일 BIT를 시작으로 60여 년에 걸쳐 다른 나라들과 BIT를 체결해 왔고, 기존 BIT를 개정한 사례도 많지 않다.¹²⁵⁾ 이에 따라 한국이 체결한 기존 BIT 중 상당수는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 BIT는 ISDS에서의 *amicus curiae* 제도와 같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제도를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자국의 모델 BIT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관련 규정

124)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조약 1260호, 1994.12.30. 발효) (“한-루마니아 BIT”);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고시 664호, 2008.1.11. 발효)(“한-루마니아 BIT 개정의정서”).

125) 외교부 홈페이지의 ‘우리나라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BIT의 일부 개정을 3건(영국, 루마니아, 이란)하였고, BIT의 전면 개정을 6건(네덜란드, 벨기에·룩셈부르크,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이란)하였을 뿐이다. 외교부 홈페이지 중 ‘우리나라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https://www.mofa.go.kr/www/brd/m_4059/view.do?seq=365930&page=1> (최종방문, 2026.7.18).

을 도입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체결한 한-네덜란드 BIT에도 해당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¹²⁶⁾ 따라서 한국은 다른 국가의 BIT와 관련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의 도입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BIT 개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도 BIT와 마찬가지로 신규 FTA를 체결하는 경우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존 FTA 가운데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FTA를 제외한 투자조항 포함 조약에서 ISDS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향후 한국이 다른 투자조항 포함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ISDS 제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요건 및 절차의 구체화

이러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제출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FTA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허용할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 호주-중국 FTA 제9.16조 제3항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건을 부과하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 한국은 투자협정에서 이러한 서면의견서 제출을 허용하기 위해 분쟁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정도로 적절하다. ISDS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쟁당사자들에게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대한 대응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26)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전면개정)(조약 1710호, 2005.3.1. 발효)(“한-네덜란드 BIT”).

이러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지 여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인지, 사실적·법적 쟁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NAFTA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2003년 10월 7일 비분쟁당사자 참여에 관한 성명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2022년 ICSID 중재규칙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의 투자협정에 포함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도 이러한 내용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중재절차의 효율성 및 비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부담 또는 불공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실제로 한국의 룬스타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요소이기도 하다. 분량 제한과 중재절차의 언어에 관한 요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추가되어야 한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관한 분량 제한이 없다면 중재판정부는 이를 검토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 절차 지연과 비용 증가로 분쟁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중미5개국 FTA, 한-이스라엘 FTA와 같은 한국의 투자협정에서는 특이하게도 서면의견서의 분량을 15페이지라고 구체적인 숫자로 정하고 있는데, 협정 문구로 이렇게 확실적인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중재규칙과 다른 국가들의 투자협정을 살펴봐도 분량 제한을 정한 경우는 다수 존재하였지만, 직접적으로 페이지 수까지 규정하는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¹²⁷⁾ 한국 투자협정에서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관련 분량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분량은 개별적인 상황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아울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가 중재언어로 쓰이지 않는다면 중재판정부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결국 분쟁당사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한국 투자협정상 규칙에 맞지 않는 서면의견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한-중미 5개국 FTA,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규칙에 맞지 않는 의견서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NGO와 같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들은 국제투자법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많으므로, 단지 서면의견서상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

127) 앞서 살펴보았듯이 NAFTA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는 2003년 10월 7일 비분쟁당사자 참여에 관한 성명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의 분량을 20페이지로 제한하자는 하였다.

였다는 이유로 중재판정부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가 각종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출되어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엄격한 태도는 NGO 등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지나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중재규칙과 다른 국가의 투자협정을 살펴보다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한국 투자협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날짜 기재, 대표자 서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 설립지, 자연인 주소, 활동의 성격, 자금조달의 출처, 확인서류,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재정적 기여, 이해관계인의 분쟁당사자와의 관계, 분쟁당사자와의 제휴 관계, 재정적 기여 등을 한 인, 정부, 그 밖의 실체 등을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의 관점과 가치 등을 판단할 때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일적 규범 체계의 마련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일적인 규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CSID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협정,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ISDS 사건 등을 분석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국제 동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국 투자협정상에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위해 중재절차 문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22년 ICSID 중재규칙 제67조 제6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분쟁당사자 일방이 반대하지 않는 한 비분쟁당사자에게 중재절차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이는 NGO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분쟁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중재절차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어서 절충적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 투자협정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결정 자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2022년 ICSID 중재규칙 제67조 제5항과 2019

년 네덜란드 모델 BIT 제20조 제13항에서처럼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중재절차의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재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NGO 입장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에서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한국 투자협정에서 중재판정부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결정 시 반드시 이유를 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통해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22년 ICSID 중재규칙 제67조 제5항처럼 결정의 시기를 마지막 서면의견서 제출 시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신속한 결정을 받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협정상 중재판정부의 결정 시한을 경직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편이 바람직하다.

한국 투자협정에서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수용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에서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앞서 살펴본 2019년 네덜란드 모델 BIT 제20조 제13항, 2021년 캐나다 모델 BIT 제36조 제1항, CETA 제8.36조에서 UNCITRAL 투명성 규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중재절차의 투명성 관련 어느 범위까지 정보의 공개 범위를 허용할 것인지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현재 한국은 BIT와 FTA에서 의도적으로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배제하고 있고, 모리셔스 협약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 도입을 위해 투자협정에서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수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수용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기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¹²⁸⁾

뿐만 아니라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 체계의 마련도

128) 모리셔스 협약은 2026년 7월 중순을 기준으로 호주, 베냉, 볼리비아, 카메룬, 캐나다, EU, 감비아, 이라크, 모리셔스, 스위스에서만 발효되어 있다. United Nations 홈페이지 중 ‘Statu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New York, 2014)’ 부분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transparency/status>> (2026.7.17. 최종방문).

필요하다. 기존 한국 FTA에 도입되어 있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 간에도 규정의 내용과 범위가 상이한 부분이 많다. 추후 FTA 개정 과정에서 가급적 통일된 방향으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 관련 모델 문안을 만들어서 BIT, FTA, 투자조항 포함 조약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상대국과 협상을 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과 문안에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이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비일관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은 ISDS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익을 보호하고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법적 장치이다.¹²⁹⁾ ISDS가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분쟁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ISDS의 정당성은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법원, 국제분쟁해결기구에서 활용되던 amicus curiae 제도가 ISDS에 도입되었고, 앞서 소개한대로 여러 ISDS 사건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이 실제로 쟁점이 되었다. 현재 주요 국제투자 중재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투자협정에서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협정을 분석해 보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 관련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규정은 투자협정의 유형과 상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FTA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어도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에 관한 규정의 법적 공백, 비일관성 및 불충분성은 중재판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그 제출과 고려 여부 등을 의존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된다. 아직 한국이 피청구인

129) 투명성은 amicus curiae 참여의 근거가 된다. Maria Beatrice Deli, "Transparency in the Arbitral Procedure", Andrea Gattini et al. (eds.),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Brill Nijhoff, 2018), p. 45.

이 된 ISDS에서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이 문제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ISDS의 대상이 점차 보건, 환경, 인권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되면서 향후 NGO가 한국이 피청구국이 되는 ISDS 사건에서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된다. 분쟁당사자도 아닌 NGO의 특정 사건에 관한 의견이 항상 타당하고 중재 판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ISDS의 정당성, 공익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들이 특정 사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를 투자협정상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단순히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투자협정에서 이러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하고,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며,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일적 규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과정을 통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의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NGO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와 국가 모두에게 안정적 분쟁해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투자협정상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규정 정비는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을 장려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ISDS가 공익성,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한국은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국제 규범의 발전 동향 및 ISDS 사건의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반영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통일적인 규범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ISDS의 정당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공익의 조화라는 현대 국제투자법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박덕영 외 13인, 『국제투자법』(박영사, 2012).

법무부, 『한국의 투자 협정 해설서: 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8).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제4판)』(박영사, 2022).

나. 논문

김대중, “국제투자중재 절차의 제3자 참여와 투명성 문제”,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2호 (2016).

김인숙, “FTA ISD 소송절차상 투명성에 관한 연구: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제120호 (2014).

김진엽, “재생에너지 관련 잠재적 국제투자중재에서 원주민들의 권리보호: 원주민들의 비분쟁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2023).

백지열, “한국 투자협정상 중재절차의 투명성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152호 (2021).

양준열, “대한민국의 모리셔스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가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연구 통권 제166호 (2025).

이재민, “2014년 UNCITRAL 투명성 협약의 법적 쟁점 : 유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4호 (2014).

다. 기타 문서

민변, [민변/국제통상 보도자료] 민변, 룬스타 ISD 중재재판부에 ‘룬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제출, 2015.12.1.

민변, [수정보도자료/국제통상위]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 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2015. 12. 30.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2023. 5. 9.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2025. 11. 19.

Minbyun, Request for an Amicus Curiae Written Submission as Non-disputing Party According to the ICSID Rule 37(2) on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30 November 2015).

2. 외국문헌

가. 단행본

Brown, Chester and Miles, Kate (eds.), *Evolution in Investment Treaty Law and Arbi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Commission, Jeffery P. and Moloo, Rahim, *Procedural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Deli, Maria Beatrice, "Transparency in the Arbitral Procedure", Gattini, Andrea et al. (eds.),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Brill Nijhoff, 2018).

Euler, Dimitrij et al. (eds.),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 Guide to th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Gattini, Andrea et al. (eds.),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Brill Nijhoff, 2018).

Schill, Stephan W. et al. (eds.), *Schreuer's Commentary on the ICSID Convention*, Thi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나. 논문

Aniodoh, Adaeze Agatha, "Amicus Curiae and Public Welfare: Bridging the Gap Between Legal Expertise and Public Interest in Investment Arbitration,"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22, No.2 (2025).

Bastin, Lucas, "Amici Curia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Eight Recent Trend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30, No.1 (2014).

Bjorklund, Andrea K., "The Participation of Sub-national Government Units as Amici Curia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 Chester Brown and Kate Miles (eds.), *Evolution in Investment Treaty Law and Arbi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Born, Gary and Forrest, Stephanie, "Amicus Curiae Participa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ICSID Review*, Vol.34, No.3 (2019).

Brickhill, Jason and Du Plessis, Max, "Two's Company, Three's A Crowd: Public Interest Intervention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Piero Foresti V South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n Human Rights*, Vol.27, No.1 (2011).

Brower, Charles N. and Schill, Stephan W., "Is Arbitration a Threat or a Boon to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 No.2 (2009).

Butler, Nicolette, "Non-Disputing Party Participation in ICSID Disputes: Faux Amici?",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66, No.1 (2019).

De Brabandere, Eric, "NGOs and the 'Public Interest': The Legality and Rationale of Amicus curiae Interventions in International Economic and Investment Dispute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2, No.1 (2011).

- Dimsey, Mariel, “Article 4. Submission by a Third Person“ in Euler, Dimitrij et al. (eds.),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 Guide to th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Fach Gómez, Katia, “Rethinking the Role of Amicus Curia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How to Draw the Line Favorably for the Public Interest”,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5, No.2 (2012).
- Kelly, Robin M., “Bridging the Private-Public Divid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Can Retrofitting Amicus Curiae Improve How Tribunals Consider Human Rights Issues?” *Cambridge Law Review*, Vol.9, No.2 (2024).
- Levine, Eugenia, “Amicus Curia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he Implications of an Increase in Third-Party Participation”,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9, No.1 (2011).
- Roberts, Anthea, “Clash of Paradigms: Actors and Analogies Shaping the Investment Treaty System”,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7, No.1 (2013).
- Schill, Stephan W., “Enhanc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Legitimacy: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a New Public Law Approach.”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2, No.1 (2011).
- Tienhaara, Kyla, “Regulatory Chill in a Warming World: The Threat to Climate Policy Posed by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7, No.2 (2018).
- Triantafilou, Epaminontas E., “Amicus Submissions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After *Suez v. Argentina*”,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24, No.4 (2008).
- VanDuzer, J. Anthony, “Enhancing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Through Transparency and Amicus Curiae Participation”, *McGill Law Journal*, Vol.52, No.4 (2007).

Van Harten, Gus,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of Individual Claims against the Stat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6, No.2 (2007).

Yu, Chen, “Amicus Curiae Participation in ISDS: A Caution Against Political Intervention in Treaty Interpretation”, *ICSID Review*, Vol.35, No.1-2 (2020).

다. 기타 문서

Apotex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UNCT/10/2, Procedural Order No. 2 on the Participation of a Non-Disputing Party (11 October 2011).

Biwater Gauff (Tanzania) Ltd.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CSID Case No. ARB/05/22, Award, (24 July 2008).

Biwater Gauff (Tanzania) Ltd.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CSID Case No. ARB/05/22, Procedural Order No. 5, (2 February 2007).

Chalker, James, “Biwater Gauff (Tanzania)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sing Confidentiality to Undermine Meaningful Amicus-Curiae Participation” (2007).

Glamis Gold, Ltd. v. United States of America, Decision on Application and Submission by Quechan Indian Nation (16 September 2005).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Third-Party Participa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11 June 2026).

LSF-KEB Holdings SCA et al.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Procedural Order No. 15, Decision on Minbyun’s Non-disputing Party Application (21 December 2015).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Decision of the Tribunal on Petitions from Third Persons to Intervene as “Amici Curiae” (15 January 2001).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Final Award of the Tribunal on

Jurisdiction and Merits (3 August 2005).

OECD, Transparency and Third Party Participation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05/01 (2005).

Piero Foresti, Laura de Carli and Others v. Republic of South Africa, ICSID Case No. ARB(AF)/07/1, Award (4 August 2010).

Piero Foresti, Laura de Carli and Others v. Republic of South Africa, ICSID Case No. ARB(AF)/07/1, Letter Regarding Non-Disputing Parties (5 October 2009).

Resolute Forest Products Inc. v.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2016-13, Procedural Order No. 6 on the Participation of Prof. Robert Howse and Mr. Barry Appleton as Amici Curiae (29 June 2017).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9, Decision on Liability (30 July 2010).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9, Order in Response to a Petition for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as Amicus Curiae (19 May 2005).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 v. Government of Canada, ICSID Case No. UNCT/02/1, Decision of the Tribunal on Petitions for Intervention and Participation as Amici Curiae (17 October 2001).

[국문초록]

ISDS에서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연구:
한국 투자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백지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ISDS의 대상이 보건, 환경, 인권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분쟁당사자 외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NGO 등 비분쟁당사자가 amicus curiae 자격으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는 중재절차에 공익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이 제도에 관하여 절차 지연, 비용 증가, 기밀성 침해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범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SDS에서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ISDS 사건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투자협정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ICSID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 다른 국가의 모델 BIT와 투자협정, 한국의 BIT와 FTA, 그리고 한국이 피청구국이 된 ISDS 사건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한국 투자협정은 대부분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하며, 일부 FTA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협정별 내용과 범위가 달라 일관된 규범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재절차 문서에 대한 접근, 중재판정부 결정의 이유 제시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사항들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직 한국이 피청구국이 된 ISDS 사건에서는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관련 사례가 많지 않지만, 향후 공공성이 강한 ISDS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투자협정에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도입하고, 제출 요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

일적인 규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중재절차 문서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보장, 중재판정부 결정의 이유 제시 의무, 합리적인 제출 요건과 절차 등을 반영하고, 향후 BIT와 FTA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모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궁극적으로 ISDS의 공익성,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국가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CSID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 투명성 규칙, NGO, 중재절차의 투명성, 비분쟁 당사자, 투자협정

[Abstract]

A Study on the Submission of Amicus Curiae Briefs by NGOs in ISDS: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Korean
Investment Agreements

PAEK JI YEOL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has traditionally developed as a mechanism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host States. In recent years, however, the scope of ISDS has expanded to include disputes involving public interests such as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leading to greater consideration of interests beyond those of the disputing parties. Accordingly, increas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arbitral proceedings. Against this backdrop, the submission of amicus curiae briefs by non-disputing parties, particularl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mechanism for incorporating public-interest perspectives into investment arbitration. At the same time,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procedural delay, increased costs, and potential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highlighting the need for an appropriate normative framework governing such particip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submission of amicus curiae briefs by NGOs in ISDS and analyzes major ISDS cases involving such particip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t identifies the shortcomings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Korean investment agreements and proposes measures for their improvement. To this end, the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ICSID Arbitration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and investment agreements of other States, Korea's BITs and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ISDS cases in which Korea has been the respondent State.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most Korean investment agreements contain no explicit provisions governing the submission of amicus curiae briefs, resulting in a significant legal gap. Even

where relevant provisions exist in certain FTAs, they differ substantially in content and scope, thereby failing to establish a coherent and consistent regulatory framework. Furthermore, important issues discussed in international practice, including access to arbitral documents and the obligation of arbitral tribunals to provide reasons for decisions on applications for amicus curiae participation, have not been adequately reflected. Although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ISDS cases involving Korea in which NGO submissions of amicus curiae briefs have arisen, institutional preparation is necessary in light of the increasing likelihood of future ISDS disputes involving matter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n investment agreements expressly incorporate provisions governing the submission of amicus curiae briefs, provide more detailed rules on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such submissions, and establish a unified regulatory framework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t further recommends introducing provisions on limited access to arbitral documents, requiring arbitral tribunals to provide reasons for their decisions, adopting reasonable procedural and formal requirements for submissions, and developing model provisions on amicus curiae briefs for use in the negotiation, conclusion, and amendment of future BITs and FTAs. These institutional reforms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 public-interest nature, transparency, and procedural legitimacy of ISDS while contributing to a more predictable and stable dispute settlement framework for both investors and States.

Keywords: Amicus Curiae, Submission of Amicus Curiae Brief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ICSID Arbitration Rules, UNCITRAL Arbitration Rules,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Non-Disputing Party, Investment Agreement